

환경부 보도자료

1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 '04. 1. 12배포
- ☐ 사진 매
- ☐ 총 8쪽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박희정 과장
송형근서기관

전화
(메일)

02-2110-6735
hyungkun
@me.go.kr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비무장지대의 토지공유화 필요성 제기

- 통일 후 난개발 방지 및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으로 보전·관리 -

- ☐ 환경부는 한반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핵심생태축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땅을 공유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04.1.13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 비무장지대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 국토의 분단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구한 세월을 거쳐 계승되어 왔던 민족의 동질성 단절이라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 그러나 최근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는 등 비무장지대는 이제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소망을 실현하는 화해의 장이되고 있다.
- ☐ 국토분단 50여년의 역사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동서로 연결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남게 하였으며, 2,716종의 야생동식물과 67종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변화시켰다.

- 또한 논과 밭, 취락지역 등이 자연적 천이(遷移)과정을 거쳐 습지로 복원된 곳에는 저어새, 두루미 등 세계적인 희귀종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낙원이 되었고,
 - 이러한 생태계의 복원현상은 세계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UNESCO 등 국제기구와 관계전문가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땅을 공유화하는 방안을 금년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처리 및 공유화방안, 토지공유화를 위한 재원확보대책,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및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토지공유화 방안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일원을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하고,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환경보전대책」을 금년중 마련하여 비무장지대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생태계 보전방안

<붙임>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생태계 보전방안

2004. 1. 13

환 경 부

1. 현 황

- 비무장지대(DMZ) 일원은 국토분단의 민족사적 상징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서를 잇는 핵심생태축
 - 폭 4km, 길이 248km, 면적 907km²(여의도 면적의 약 300배)
- DMZ의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사이에는 민간인 통제선(약 1,369km²)이 설정되어 농업 등 1차산업 허용
- 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 약 20km이내 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약 8,097km²) 설정
 - 경기·강원·인천 3개 시·도, 15개 시·군·구, 656천명거주

2. 생태적·지리적 특성

- 생물다양성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寶庫)
 - 2,716종의 야생동·식물 및 67종의 멸종·보호 야생동·식물 서식
- 논·밭 등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지는 철새들의 낙원
 -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루미, 저어새 등의 서식지
- 지난 50여년간의 자연 천이(遷移)과정을 거쳐 생태적 복원이 일어난 지역으로 생태복원의 좋은 모델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UNESCO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생태분야 전문가의 관심 증대

3. 여건변화 및 문제점

☐ 남북교류협력의 전초지역으로 급부상

- 남북연결 철도·도로 건설로 교통의 주요거점, 금강산 관광 등 동북아 관광의 거점 및 남북협력의 교두보로 발전 예상

☐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강화로 개발가속화 우려

-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접경 지역의 난개발 초래 가능성

※ 임야 68.3%, 농경지 16.4%, 대지 1.3%, 도로 1.4%, 기타 12.6%

☐ 자연생태계보전 관련 남북교류·협력 미흡

- 자연생태계보전관련 의제는 경제협력 및 이산가족 등의 현안과제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

4. 자연생태계 보전방안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남북당국자회담 의제 반영 및 민간단체의 방북활동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 유지 및 지원
- 국제적 협력에 의한 북측참여 유도 및 협력방안 마련

☐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공유화 방안 검토(금년중 조사연구 착수)

-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및 토지공유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다른 국유지와 대토(代土), National Trust 운동 전개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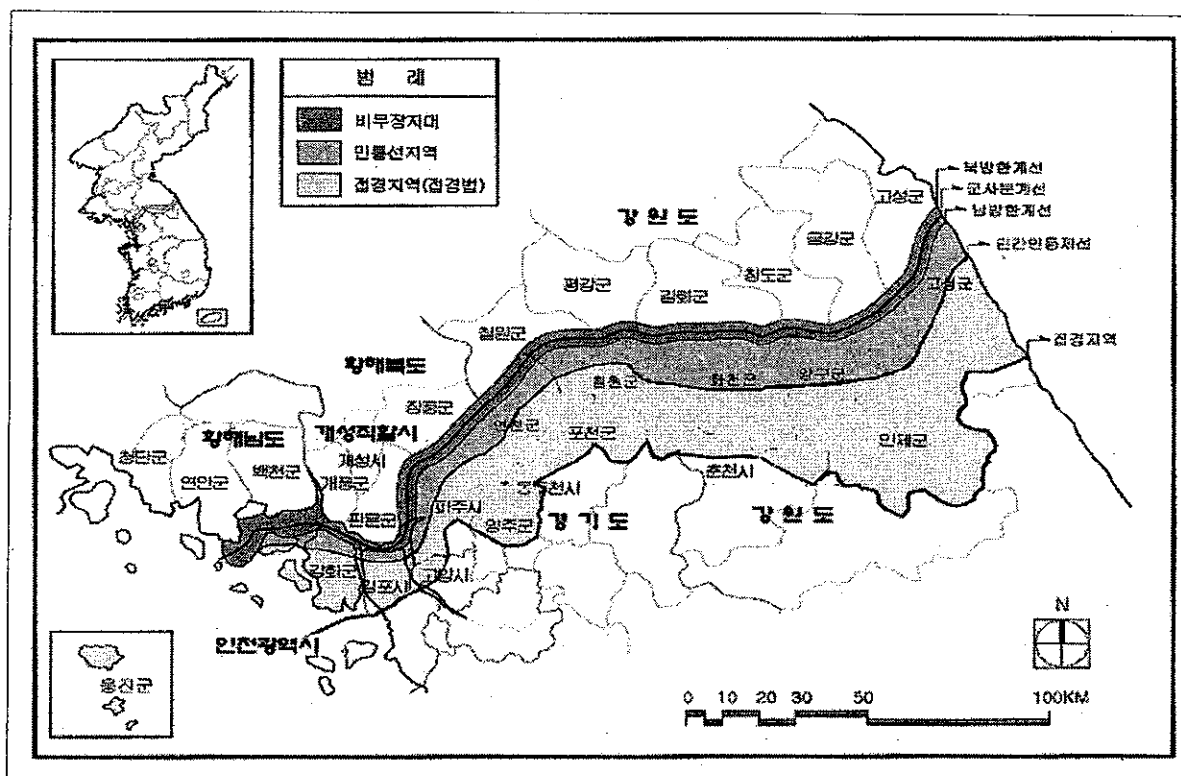
☐ 생태적 가치에 따른 권역별 구분 관리체계 구축

- 자연환경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별 생태적 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방안 마련
- 남북경협사업 및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한 환경성 평가 실시
 - ※ 사례 :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철도 사업

〈참고 1〉

DMZ 및 접경지역 현황

- 비무장지대 :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폭 4km, 길이 248km, 면적 907km²
- 민통선지역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남방한계선(철책)으로부터 5~20km 이내지역, 총 1,369km²
- 접경지역 :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 일부 민통선지역과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이내 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구, 656천명 거주, 총 8,097km²
 - 민통선이북지역 : 농업생산지역, 집단취락지역, 남북협력사업지역
 - 민통선이남지역 : 민통선 20km이내 지역중, 5개 지표(인구, 도로, 상수도, 제조업종사자, 군사시설보호구역)중 3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
 - 해상지역 :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으로서 백령도·대청도 등(무인도서 제외)



〈참고2〉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 기본개념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제도는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도입
 - '03년말 현재 전 세계에 440개소 지정, 우리나라는 설악산('82), 백두산('89), 한라산('02.12) 등 3개소 지정
- ※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ry Biosphere Reserve)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 지정(현재 5개소 지정)

□ 구 성

- 핵심구역(Core Area) : 엄격한 보호대상지역,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지역
- 완충구역(Buffer Zone) : 환경교육·생태관광·연구활동 등 보전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만 허용되는 지역
- 전이구역(Transition Area) : 다양한 형태의 경작활동, 거주 및 관광지 등으로 이용되는 지역

□ 지정의 의의 및 효과

-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생물보호에 동참
- 국제기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생태계 조사·연구수행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에 기여

〈참고3〉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 지정방식 :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정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명칭
 - 한반도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The Korea DMZ Biosphere Reserve)
- 대상지역
 - 비무장지대 및 비무장지대와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접경지역
- 대상지역 구분 및 관리방안
 - 핵심지역(DMZ 및 생태계 우수지역), 완충지역(핵심지역 인접지역), 전이 지역(취락, 농경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 생태계 조사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 생태계조사
 - 비무장지대 : 위성자료(IKONOS)를 토대로 4~5곳 선정, 남북한 공동조사
 - 기타 지역 : 남북한 각각 조사후 자료 정리교환(남한 : 기존조사자료 활용)
- 관리·모니터링 기구설립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병행하여 남북한 지역내 각각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DMZ 생태계의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추진절차

남북합의 → 대상지역 선정 및 생태계공동조사 → 대상지역 구분 및 관리계획 수립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유네스코 MAB 국제조정 이사회)